

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

I 추진방향

- 상생·협력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우선 지원
- 소규모 노후 아파트 등 자금사정이 열악한 공동주택 지원
-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 보수·보강으로 안전사고 예방
- 노후 공용시설물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
II 추진계획

■ 추진기간 : 2017. 2 ~ 2017. 12월

■ 지원대상 : 공동주택 131개 단지

- 사용검사일 후 5년이(2012.1.1. 이전) 경과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(원룸형제외)
- 아파트 81, 연립주택 27, 주상복합 20, 다세대 3

■ 지원사업 분야(별표2)

- 공동체 활성화 시설 : 10개 분야
-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: 11개 분야

III 지원방향

지원기준

- 각 아파트(공동주택) 단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
- 비율에 따른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
-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 의무화(사업자선정 지침 준수)
- 사업신청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가 5% 이상 감액될 시 지원결정액도 감액비율 만큼 감액
- 노후도, 규모(세대수), 지원횟수에 따라 가감률 적용 차등지원
- 전년도 지원대상 아파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페널티부여

■ 지원제외

-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을 위한 경상비
-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요하는 시설
- 지원 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
-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
- 동일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

■ 지원금액

-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 : 총 예산의 5%이내(13,000천원)
-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50~70%(자부담 30~50%)#별표1

※ 지원신청 단지수에 비례하여 실제 지원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

-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

IV 소요예산

■ 소요예산 : 260,000천원 (구비)

V 행정사항

■ 접수기간 : 2017. 2. 2. ~ 3. 3.(30일간)

【지원사업 설명회 개최】

- 일 시 : 2017. 2. 6.(월) 14:00 ~ 17:00
- 장 소 : 종합상황실
- 대 상 :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150여명
- 내 용 : 구정홍보 및 지원사업 설명회 등 교육실시(주택행정팀장)

별표1

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비율

○ 공동체 활성화 사업

지 원 사 업	자치구 분담률(%)	공동주택 분담률(%)
1.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, CCTV의 설치·유지	70	30
2.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	70	30
3.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	70	30
4.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	70	30
5.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	70	30
6.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	70	30
7.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	60	40
8.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,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	60	40
9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	60	40
10.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	60	40
11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60	40

○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

지 원 사 업	자치구 분담률(%)	공동주택 분담률(%)
1.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	60	40
2. 경로당의 보수	60	40
3.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	50	50
4.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·개선	50	50
5.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·개선	50	50
6. 자전거도로·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·개선	50	50
7.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·보강	50	50
8. 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	50	50
9.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,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	50	50
10.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	50	50
11.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	50	50
1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50	50